

제74회 제헌절을 맞이하여 조속한 공휴일 재지정을 촉구한다.

오는 7월 17일은 제74회 제헌절이다.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공포하여 건국의 초석을 놓은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우리 국민은 제헌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수천 년 노예적 신민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주권자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고,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선진문명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

제헌절의 국가적·국민적·역사적 의의가 이처럼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2005. 6. 3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당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4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행정입법을 하였고, 문재인 정권은 2021. 7. 7.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권이 바뀌더라도 제헌절은 공휴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이는 현재의 5대 국경일 중 건국의 정당성과 국가 정체성에 관련된 제헌절만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도록 못을 박은 것이다.

이에 한번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가치의 국민적 내면화를 위하여 작년 2021. 7. 16.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입법을 청원하였으나, 국회는 심사기간을 제21대 국회의 임기만료일인 2024. 5. 29.까지 연장한다는 통보를 해왔을 뿐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의 청원권을 조롱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 다수당의 본심을 드러낸 횡포에 다름없다.

무릇 헌법은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본이며, 국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체다. 인류사에서 근본을 잊은 국민이 번성했던 역사는 없다. 우리는 74년 전 헌법을 만드신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세대의 정신을 기리고, 건국정신을 바탕으로 나라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제정하는 일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는 건국세대의 후예들로 구성된 헌법기관이라면 마땅히 정파적·이념적 편협성에서 벗어나 한번의 청원을 수용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22. 7. 1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